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7 |
|----------|----|

제출년월일 : 2010. 8. 19.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대상(안 제6조)

다.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안 제7조)

- 특정구역 지정 시 시장과 사전협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반영

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안 제8조)

마.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대상 편익시설물
(안 제11조)

바.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안 제12조)

사. 현수막 표시방법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아. 전단의 배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안 제18조)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는 3인 이상의 전문가 의견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도록 규정
-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보행자 또는 주거환경에 침해가 없도록 규정함
-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25%이상에서 20%로 규정함

차.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카.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타. 광고물의 실명제 운영 및 그 광고대상물(안 제30조)

파. 우수광고물 시상 및 선정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하. 과태료 상한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 조정 (별표 3)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부터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별론

3.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따라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청장은 영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

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3장 금지 및 제한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2. 지상 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4. 낙석방지시설물
5. 방음벽, 석축, 계단, 옹벽 및 교각
6.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7.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7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① 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또는 총면적
2.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또는 총면적
3.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모양 또는 면적
4. 표시위치 또는 장소
5. 영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4장 표시방법

제8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과 외국 문자를 병기(併記)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5. 도시경관의 향상 및 광고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 등은 광고물 표시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상징도안,

상징이미지, 픽토그램 또는 여백 등(이하 "도안 등" 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상광고물, 표시비율, 도안 등의 인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상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의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지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부터 60미터 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의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제7조제1항의 고시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른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해당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른 공연간판은 벽

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에 따른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 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 크기는 세로 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 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쪽(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 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청장이 설치하여야 하고,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부터 8미터 이내로 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

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고,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연립형은 2개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계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개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청장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 관련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벽보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은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의 부착신청이 없는 경우와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255센티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부터 2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며, 벽보 1매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 및 벽보의 크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명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청장이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또는 총면적
2.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또는 총면적
3.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모양 또는 면적
4. 표시위치 또는 장소
5. 영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5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관련업무 본부장으로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전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안전도검사

제22조(안전도검사) ① 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청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시설기준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 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청장이 따로 정하여 게시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의뢰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게시관 또는 인천광역시 시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8장 광고물 실명제 및 수수료 등

제30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 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

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실명제 표시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 할 때 및 변경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필증을 교부 할 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 할 때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영 제12조에 따라 특정구역 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중 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④ 영 제12조에 따라 특정구역 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32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제34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둘 수

있다.

③ 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우수광고상) ① 청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시기, 선정방법, 절차 및 부상 등은 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고시는 이 조례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31조제1항 관련)

가. 옥외광고물

(단위 : 원)

| 광고물의 종류 | 구분 | 단위 | 기 준 | 수수료 | 비 고 |
|---|----|----|--------------------------------|--------|-----|
|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 외의 간판) | | 개 | · 6제곱미터 이하 | 4,000 | |
| | | |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500 | |
|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 | 개 | · 20제곱미터 이하 | 40,000 | |
| | | |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00 | |
| 2. 세로형간판 | | 개 | · 6제곱미터 이하 | 3,000 | |
| | | |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500 | |
| 3. 돌출간판 | | 개 | · 3.5제곱미터 이하 | 20,000 | |
| | | |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00 | |
| | | |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 5,000 | |
|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 | 개 |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 | |
| 5. 옥상간판 | | 개 | · 10제곱미터 이하 | 40,000 | |
| | | |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5,000 | |
| 6. 지주이용간판 | | 개 | · 10제곱미터 이하 | 20,000 | |
| | | |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00 | |
|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개 |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20,000 | |

| 구분 광고물의 종류 | 단위 | 기 준 | 수수료 | 비 고 |
|---|-------------|--|-----------------------------------|-----|
|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 개 |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3,000 1,000 | |
|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 개 |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 13,000 15,000 | |
|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 대 대 대 | | 400,000 10,000 2,000 | |
| 11. 선전탑 | 개 | | 5,000 | |
| 12. 아취광고물 | 개 | | 5,000 | |
| 13. 창문이용 광고물 | 개 | | 5,000 | |
|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 개 개 |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6,000 1,500 10,000 2,000 | |
| 15. 벽 보 | 매 | · 50매당 | 5,000 | |
| 16. 전 단 | 매 | · 1,000매당 | 5,000 | |
| 17. 광고물 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 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 개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 료의 2배를 적용 | | |

나.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
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 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
용한다.
- (2)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
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2]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광고물 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 적 용 기 준 | 수수료 |
|--|--|---------------------------|
| 1. 옥상간판 |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21,000 38,000 1,300 |
|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4,000 20,000 1,600 |
|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4,000 20,000 800 |
| 4. 지면부터의 높이가 4 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4,000 20,000 800 |
|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 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
| 6. 현수막게시시설 |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 11,000 600 |
| 7. 그 밖의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

| 위 반 사 항 | 과태료금액 |
|--|---|
|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 |
| 가. 입간판 | |
| (1)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
|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
| - 0.5제곱미터 이하 | 8만원 |
|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13만원 |
|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19만원 |
|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 미만 | |
|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25만원 |
|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30만원 |
|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39만원 |
|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
|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45만원 |
|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60만원 |
|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 75만원 |
|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79만원 +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
| (2)그 밖에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 |
|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
| - 0.5제곱미터 이하 | 5만원 |
|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7만원 |
|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9만원 |
| (나)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2제곱미터미만 | |
|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5만원 |
|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20만원 |
|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29만원 |
|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
|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35만원 |
|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40만원 |
|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 45만원 |
|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49만원 +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 |

| 위 반 사 항 | 과태료금액 |
|----------------------------|---|
| 나. 현수막 | |
| (1)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 |
|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
| - 1.0제곱미터 이하 | 5만원 |
|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7만원 |
|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 9만원 |
|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
|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13만원 |
|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15만원 |
|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19만원 |
|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
|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25만원 |
|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35만원 |
|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 45만원 |
|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49만원 +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
| (2)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 |
|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
| - 1.0제곱미터 이하 | 5만원 |
|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7만원 |
|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 9만원 |
|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
|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13만원 |
|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15만원 |
|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19만원 |
|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
|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25만원 |
|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35만원 |
|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 45만원 |
|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49만원 +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

| 위 반 사 항 | 과태료금액 |
|---|---|
| (3)그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 |
|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
| - 1.0제곱미터 이하 | 5만원 |
|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7만원 |
|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 9만원 |
|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
|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12만원 |
|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15만원 |
|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18만원 |
|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
|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25만원 |
|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35만원 |
|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 45만원 |
|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49만원 +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
|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 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금액의 2배 적용 |
| 다. 벽보 | |
| (1) 일반 광고내용 | |
| - 1장 이상, 10장 이하 | 장당 10천원 |
| - 11장 이상, 20장 이하 | 장당 15천원 |
| - 21장 이상 | 장당 25천원 |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고내용 | |
| - 1장 이상, 10장 이하 | 장당 15천원 |
| - 11장 이상, 20장 이하 | 장당 20천원 |
| - 21장 이상 | 장당 30천원 |
| 라. 전단 | |
| (1) 일반 광고내용 | |
| - 1장 이상, 10장 이하 | 장당 5천원 |
| - 11장 이상, 20장 이하 | 장당 10천원 |
| - 21장 이상 | 장당 15천원 |
|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고내용 | |
| - 1장 이상, 10장 이하 | 장당 15천원 |
| - 11장 이상, 20장 이하 | 장당 20천원 |
| - 21장 이상 | 장당 30천원 |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 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조례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4]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위 반 사 항 | 이 행 강 제 금 |
|----------------------------|--|
|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 |
|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
| - 2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
|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
| - 3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
| - 4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45만원 |
|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
| - 5제곱미터 이상, 6제곱미터 미만 | 55만원 |
| - 6제곱미터 이상, 7제곱미터 미만 | 65만원 |
| - 7제곱미터 이상, 8제곱미터 미만 | 75만원 |
| - 8제곱미터 이상, 9제곱미터 미만 | 85만원 |
| - 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95만원 |
|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
| - 10제곱미터 이상, 12제곱미터 미만 | 110만원 |
| - 12제곱미터 이상, 14제곱미터 미만 | 130만원 |
|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 145만원 |
| - 16제곱미터 이상, 18제곱미터 미만 | 165만원 |
| - 18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85만원 |
|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199만원 +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
| 2. 돌출간판 | |
|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
| - 2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
|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
| - 3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
| - 4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49만원 |
|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
| - 5제곱미터 이상, 6제곱미터 미만 | 55만원 |
| - 6제곱미터 이상, 7제곱미터 미만 | 65만원 |
| - 7제곱미터 이상, 8제곱미터 미만 | 75만원 |
| - 8제곱미터 이상, 9제곱미터 미만 | 85만원 |
| - 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95만원 |
|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
| - 10제곱미터 이상, 12제곱미터 미만 | 110만원 |
| - 12제곱미터 이상, 14제곱미터 미만 | 130만원 |
|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 150만원 |
| - 16제곱미터 이상, 18제곱미터 미만 | 170만원 |
| - 18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90만원 |
|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199만원 +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

| 위 반 사 항 | 이 행 강 제 금 |
|--|--|
|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별론 | |
|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
| - 2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
|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45만원 |
|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
| - 3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미만 | 60만원 |
| - 4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80만원 |
|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
| - 5제곱미터 이상, 6제곱미터 미만 | 110만원 |
| - 6제곱미터 이상, 7제곱미터 미만 | 130만원 |
| - 7제곱미터 이상, 8제곱미터 미만 | 150만원 |
| - 8제곱미터 이상, 9제곱미터 미만 | 170만원 |
| - 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190만원 |
|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199만원 +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
|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별론, 건물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 |
|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
| - 2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
|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
| - 3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
| - 4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48만원 |
|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
| - 5제곱미터 이상, 6제곱미터 미만 | 55만원 |
| - 6제곱미터 이상, 7제곱미터 미만 | 65만원 |
| - 7제곱미터 이상, 8제곱미터 미만 | 75만원 |
| - 8제곱미터 이상, 9제곱미터 미만 | 85만원 |
| - 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95만원 |
|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
| - 10제곱미터 이상, 12제곱미터 미만 | 110만원 |
| - 12제곱미터 이상, 14제곱미터 미만 | 130만원 |
|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미만 | 150만원 |
| - 16제곱미터 이상, 18제곱미터 미만 | 170만원 |
| - 18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90만원 |
|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
| - 20제곱미터 이상, 25제곱미터 미만 | 210만원 |
| - 25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 230만원 |
| - 30제곱미터 이상, 35제곱미터 미만 | 245만원 |
| - 35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260만원 |
| - 40제곱미터 이상, 45제곱미터 미만 | 280만원 |
|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90만원 |
|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299만원 +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

| 위 반 사 항 | 이 행 강 제 금 |
|--|--|
|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
|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
|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40만원 |
| - 연면적 6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이하 | 50만원 |
|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 60만원 |
|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70만원 |
|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 75만원 + 21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100만원 이하) |
|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
| - 애드벌룬(공) 1개 | 40만원 |
| - 애드벌룬(공) 2개 | 60만원 |
|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 80만원 + 3개 초과 1개당 5만원 가산(100만원 이하) |
|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
|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
|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40만원 |
| - 연면적 6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이하 | 50만원 |
|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 60만원 |
|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70만원 |
|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 80만원 + 21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100만원이하) |
| 나. 교통안내소 | 가로형간판에 준함 |
|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 라.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
| 마. 가목부터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 |
|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25만원 |
| - 연면적 6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이하 | 30만원 |
|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 35만원 |
|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 36만원 + 16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50만원미만) |

| 위 반 사 항 | 이 행 강 제 금 |
|---------------------------|-----------------------------------|
|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8. 교통수단이용광고물 | |
| 가. 비행선 | |
| (1) 무인비행선 | |
|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150만원 |
|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 160만원 + 11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
| (2) 유인비행선 | |
|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200만원 |
|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 210만원 + 11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
| 나. 그 밖의 교통수단 | |
|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
| - 2제곱미터 미만 | 15만원 |
| -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5만원 |
|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
| - 3제곱미터 이상, 4제곱미터 미만 | 35만원 |
| - 4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45만원 |
|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 49만원 +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 |
|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간판에 준함 |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 (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제3조제3항 관련)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검 사 항 목 | | 검사내용 및 기준 | 검사결과 |
|-------------------------|--------------------|--|------|
| 기 본 사 항 |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
| 법 규 |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 |
| 사 용 자 재 | |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 |
| | | 국가·공공기관에 따른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
| | |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 |
| 접 합 부 위 |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 |
| | |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 |
| | 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
| | |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
| 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 |
| 전 기 설 비 | |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 |
| | |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
| |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 |
| 통 행 |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
| |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
|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 |
| 기 타 | |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 |

[별지 제6호 서식]

| | | | |
|--|----------------|----------------------------|----------|
|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 | | |
| 수 탁 자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업소명 (단체명) | | |
| | ④ 주 소 | | |
| ⑤ 영업장 소재지 | | | |
| ⑥ 위 탁 기 간 | | 20 . . . ~ 20 . . . (년 월) | |
|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직인</p> | | | |

[별지 제7호 서식]

- 규 격 :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 |
|--|
| <p>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10px auto; padding: 10px;"><p>사 진 (3.5×4.5)</p></div> <p>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p> |
|--|

<후 면>

| |
|---|
| <p>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p> <p>자 격 기 한(20 ~ 20)</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직인</p> |
|---|

[별지 제9호 서식](제29조제4항 관련)

|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 | | | | |
|---|------|--|---------|--|
| 청 구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 ④광고물 등 종류 | | | ⑤수 량 | |
| ⑥광 고 내 용 | | | | |
| <p>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p> | | | | |
| 광고물 등 인수증 | | | | |
| 인 수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 ④광고물 등 종류 | | | ⑤수 량 | |
| ⑥광 고 내 용 | | | | |
| <p>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인수인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p> | | |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련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의2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제16조(광고물실명제) <input type="checkbox"/>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등) ○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30조의2(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 제34조(위원회의 기능) ○ 제46조(과태료의 부과) |
|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법령 발취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관할 지역내 설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8.7.9>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

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②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7.9>

제30조의2(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등중 동조제2호·제4호·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8.7.9>
2. 제3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3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등중에서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시·군·구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시·군·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시·군·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시·군·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⑪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는 "시·도"로, "시·군·구조례"는 "시·도조례"로 본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시·군·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군·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위원회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 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관할 시·군·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7.9>

③ 삭제 <2008.7.9>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은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